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7가단1020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8. 8. 24.

판결 선고 2018. 9. 2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589,854원 및 그 중 45,287,704원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9.2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6. 접수 제309279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1. 접수 제327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30. 접수 제344995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6. 9.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1.접수 제327725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30. 접수 제344995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A는 원고에게 45,589,854원 및 그 중 45,287,704원에 대한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목록 1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9. 20.자 매매계약을 "45,589,854원 및 그 중45,287,704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49,941,194원)"의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5,589,854원 및 그 중 45,287,704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49,941,1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9.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2012.09.24.	5,000만원 (2015. 9. 24. 4,500만 원으로 변경)	2013.09.24. (2017.09.22.)	중소 기업은행	2012.09.25.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2) 피고 A는 원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기한 내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만료일의 익일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금채무에 대한 각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는 2016. 11. 23.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1. 30.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6.12.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287,704원(보증원금 잔액 45,000,000원 + 이자287,70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02,1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는 2016. 8. 30. 별지 목록 1,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 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6. 9.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6. 9.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A는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 피고 B은 2016. 9.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피고 B은 2016.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16. 9.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30.부터 2016. 9. 20.까지사이에 피고 A의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4,093,000원 이상인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억 3,800만 원 내지 3억 7,2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D아파트 제901동, 시가 4억 7,50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을 뿐이어서 그 가액이 8억 1,300만 원(= 3억 3,800만 원 + 4억 7,500만 원) 내지 8억4,700만 원(= 3억 7,200만 원 + 4억 7,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순번	채권자	발생일자	금액(원)	비고
1	농협	2011. 12. 9.	114,000,000	개인채무
2	우리은행	2013. 10. 30.	242,456,000	개인채무
3	중소기업은행	2009. 10. 3.	1,713,453,000	보증채무
4	국민은행	2009. 9. 23.	237,500,000	보증채무
5	우리은행	2009. 8. 19.	510,661,000	보증채무
6	신한은행	2015. 1. 2.	60,000	보증채무
7	신용보증기금	2010. 4. 30.	1,802,803,000	보증채무
8	서울보증보험	2016. 6. 21.	50,000,000	보증채무
9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 9. 10.	200,000,000	보증채무
10	하나캐피탈	2015. 5. 20.	5,723,000	보증채무
11	효성캐피탈	2015. 3. 31.	91,198,000	보증채무
12	디지비캐피탈	2015. 8. 31.	236,239,000	보증채무
합 계			5,204,093,000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B, C에 대하여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웅진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5,589,854원(= 45,287,704원 + 302,1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인 45,287,70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12. 21.부터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1. 2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상당이 지난2016. 11.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²⁾이 발생한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³⁾.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당시 그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와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이나 위 각 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피고 B의 선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은행대출 1억1,500만 원, F 1억 원,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승계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은행대출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F에 대한 채무 합계 3억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8.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 A와 사이에 추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이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입금처도 피고 A가 아닌 에이치원스틸주식회사임),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억 7,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중개인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체결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의 선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을나 제2, 4호증, 을다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4. 14. 에이치원스틸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위와 인천 용진군 G 대 594㎡ 위에 각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8,770만 원으로 정한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대금지급시기는 2016. 4. 22. 25%, 2016. 5. 20. 약 20%, 2016. 7. 20.까지 213,235,000원을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 C은 잔금기일로부터 2개월 상당이 지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에이치원스틸 주식회사 또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4),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이 위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2016. 9.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2016. 9.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2016. 9.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1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8. 기보과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3) 피고 C은 변론종결 이후 2018. 9. 19.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A 개인이 아니라 E라는 업체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는 피고 A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상호인 것으로 보임.

4) 피고 C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2016. 7. 22.까지 합계 247,241,5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음.